
서울특별시 마포구새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11. 28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8. 11. 18
- 다. 위원회회부 : 2008. 11. 20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2008. 09. 24)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와 불일치되는 용어정비를 위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일부 변경안(2008. 10. 09)이 각각 이첩·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

3.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안 제5조)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
(안 제8조)
- 다.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에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 정비
(안 제12조)
- 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 정비
(안 제13조)
- 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
(안 제14조)
- 바.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 및 인용 법조문 정비
(안 제16조)
- 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 및 인용 법조문 정비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액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제정문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10.16 ~ 11.05)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검토결과

○ 제출경위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와 불일치되는 용어 정비를 위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변경안이 2008년 10월 9일 각각 이첩·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임.

○ 주요내용

안 제4조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에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 및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 및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음.

○ 조례안 검토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인용 법조문 및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